

#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94. 4. 22

조례정비특별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박양헌 사회·도시위원장의 12인
- 나. 제출일자 : 93. 12. 7
- 다. 회부일자 : 93. 12. 23
- 라. 상정일자 : 94. 4. 22

## 2. 제안설명요지(설명자 : 이재영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815호(92. 12. 31) 개정으로 인하여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3조(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기능), 제4조(위원회의 구성), 제10조(운영세칙)에 규정됨으로 폐지

### 나. 주요골자

-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(안)

## 3. 전문위원 검토 의견 요지(전문위원 허면)

조례는 의료보호법에 따라 구에 의료보호대상자 선정등을 심의의결할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근거조례였으나,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815호로 92년 12월 31일로 개정되어, 이 개정시행령 안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, 위원회구성, 운영세칙등 위원회에서의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

4. 토론요지

없음.

5. 수정안요지

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.

반대 : 없음.

7. 첨부 :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회조례폐지조례(안) 1부

## 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(안)

대구직할시달서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(91.10.1 조례 202호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